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7.17. 조례 제35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 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한옥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5.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을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 호, 제10호에 따라 한옥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 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심의대상) 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2. 제9조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등록) ①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교부한다.
- 제6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지원을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8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 간이 경과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한옥이 멸실된 경우
-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 수선 등을 한 경우
- 3. 제6조제2항의 경우에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한옥 등록 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 2. 한옥의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제9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공사비용의범위 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 ③ 동일 한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 1. 제2항제1호에 의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20년 경과 후
 - 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10년 경과 후
 - 3.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5년 경과 후
 - ④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시기) 시장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제 9조에 따른 지원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0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조 금을 전액 환수한다.
 - 1.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 회복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6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

르며, 보조금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른다.

- 제13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보조금을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유자	주소								
	(2	·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5 5 5 7 7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대지위치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대지면적(m²)	연면적(m²)							
현 황	충수	용도							
_ 0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건립일							
	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 대수선 외 부 []지붕 []	담장 []벽 []대	문 []그 외						
등 계획	[] 수 선 내 부 []부엌 []	화장실 []그 외							
[] 신 축 [] 개 축 ([]전체 [] 부분 :)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기	(+)	(서명 또는 인)						
<u></u> 안임	당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									
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									
	한옥소유자	▶ 시 장							
		L 관련서류 검토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	님의(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

한옥 등록증										
ШO	록	번 호		-	-		등	록 일 지	:}	
소	유	자 등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кlo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m²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안양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인)										
				안	양 /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2 五十	주	소			(전호	화번호 :	')		
대지위치											
	※ ₹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한옥	□ 개	량한	·上옥					
건축물 현황	대지단	면적		m²		연면적			m²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5	용 도					
	구	조				건 립 일					
카루 시니 ㄷ				ΗТ							
향후 수선 등 계획				보조 지원 내	요						
계득				시트에	0						
		-	현 황 사	진(전·후면	₫)						

【별지 제4호서식】

한옥 건축 • 수선 등 지원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				
신청 내용 및 금액	신청내용	[]신축 [[]수선(외관]증축 []개특 ŀ, 내부)	축 []재축	[]0 ?	덕 []대수선/	리모델링		
	신청금액	총공사비			원					
	2804	보 조 금				원 (공사비의	의	%)	
소유자 등	성 명				생년월	월일			성별	
	주 소				(전	화번	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 번호					
	상 호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면조	:			m²)
	층 수	지하 층	, 지상	Š	연면직	4			m²	
건축물 현 황	건폐율			%	용적률	₹			%	
	용 도									
		건축자산의 지원신청		_	제103	조제1	항에 [따라 위	와 같C	이 한
				-1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 •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등록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	호 :)						
	공사기간							
성명	면허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u> 회사명</u>	사 업 장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주소	_							
(전화번:)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강이 항옥 건축소설 등이 참소시고서를 제출하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기 있는 경우에 한	· 함)						
	주소 (전화번: 성명 (서명 또는 인) 상호 주소 (전화번: 성명 회사명 주소 (전화번: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 신청인(건축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예공시	근 大에 《표를 입니다.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건 축 주	주소	I							
	(전	화	번호 :)					
대지위치									
착수일			준공일						
설 계 자	성명 (서명 또는	면허번호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전	·번호 :)							
	성명 (사	또는 인)							
공사시공자	회사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							
준공검사자	검사일 검사(확인	인)자 (서명 또는 인						
수선등 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를 []수선(외관, 내부)	Š	[]이전 []디	H수선/리모델링					
	층수		연면적(m²)						
건축물	_ ,	5							
현 황	건폐율(%)		용적률(%)						
	용도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3	조라	ᅨ」 제10조제4형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안양시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참부서류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u> </u>								

【별지 제7호서식】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등록번호			등록일									
	성 명		생년	년월일 -	성별							
소유자 등	주 소	- '										
			(전화번호	호 :)							
대지위치												
	[] 전통한옥 [] 개량한옥											
	대지면적		m²	연면적								
건축물	÷ ^	-1-1 		0 -	m²							
현 황	층 수	지하 층, 지수	상 층	용 도								
	구 조			사 용								
				승인일								
	[]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등록취소	시실이 없는 경우											
사유	[]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이											
	경과	한 경우										
「안양시 한	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	한 조례」제	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의 취소를	를 요청합니	l다.										
		신청인(소유자 또	「し コネス\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0101	시장 구		E世 包玉千)		(시청 또는 인)							
점부서류 	1. 한옥 등		T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 등록 취소												
① 한옥 등록 취소요청서 제출												
	한옥소	-π/ι		— ▶ 시	장							
	L 관련서류 검토											

【별지 제8호서식】

권리 · 의무 승계서

대지조건	대지	위치					시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물현황	연 [면 적								
보조금 지원현황	한옥	수선	등 구분							
	보조금액			보조	보조금 교부일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지			<u>!</u> 수자)
	성	명		(전호	화:	(인)			(전화:	(인))
권리·의무	생년	월일								
승계	주	소								
	내	용	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내고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u> </u>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